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시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세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절차 개선 (신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감면 신청은 도내에서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에게도 감면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감면신청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를 즉시 사용본거지 시장·군수에게 이송토록 관련 조문 개정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편의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임.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감면확인서 등 서류가 보관된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감면처리 하는 것이 감면절차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의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절 차를 간소화하여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시책이라고 보여짐.

붙임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